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 제4조)
-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위탁(안 제5조 ~ 제7조)
- 지도·점검, 표창,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 (2012. 2. 1., 시행 2012. 8. 2.)되었으며,

-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한편, 영등포구 아이돌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아이’, ‘보호자’, ‘아이돌봄’,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개념을 정의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또한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계획)는 아이돌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목표, 자원 조달,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는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의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이돌봄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또한 돌봄노동자 대상에 포함되어있으나,
- 동 조례는 돌봄노동자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본 조례안은 아이

돌봄 및 아이돌봄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로서, 조문 간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위탁)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안 제8조(지도·점검)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이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9조(포상)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칙은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용어를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고, 개정 전·후 규정 간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맞벌이 가구 확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아이돌봄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범위의 명확화,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1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 의 자: 전승관 · 이성수 · 이예찬
정선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위탁(안 제5조 ~ 제7조)
- 라. 지도·점검, 표창,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10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관리·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